2021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대덕구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DAEDEOK-GU COMMUNITY SUPPORT CENTER

자료집 순서

1.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소개 — 5

2. 공모사업 공고문 — 13

3. 공모사업 집행기준 — 21

4. 공모사업 신청서식 — 39

5. 공동체 공모사업 DB시스템 이용 매뉴얼 — 93

6. SDGs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 119

1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소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소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좋은마을만들기'를 실천하는 주민공간입니다.

첫째, 주민의 등장을 돕습니다.
둘째, 마을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셋째, 주민과 주민의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넷째,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공동체 정책을 개발합니다.

설립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설립일	2019년 8월 1일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3층(송촌동행정복지센터)
대표자	홍은영 센터장
직원현황	총 6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2, 팀원2)

홍 은 영 센터장
센터 운영 총괄책임,
지역연계 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전략 기획
070-4286-4219

송 직 근 사무국장
센터 운영 실무총괄,
대외협력 및 교류 등
070-4286-2060

조 수 현 팀장
회계, 인사, 총무,
행정지원,
공간운영·관리
070-4286-2061

신 정 은 팀장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활동가 육성관리
070-4286-0824

배 은 열 팀원
마을 미디어
플랫폼 구축,
공동체 활동 기록 등
070-4286-1167

권 인 호 팀원
마을계획수립 및
운영기획
주민자치교육 및
운영촉진
주민참여예산 및
공동체사업 진행 등
070-4286-5763

주민공간 | 공간운영방향

'배려와 존중' 의 상생공간 –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

· 주인의식 : 우리의 자산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수칙 준수
· 공론공간 : 지역의제를 항시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장" 기획
· 협업공간 : 공통의 관심사를 묶어 실천할 수 있는 '함께' 프로젝트 실험
· 아카이빙 : 공동체 성장 기록물을 수집 전시하여 공동체의 가치 확산
· 일상상담 : 공동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는 일상적 상담

'환경친화' 지향 실천공간 – Zero plastic을 지향하는 공간

· 마을부엌, 카페 등의 사용도구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실시

'즐겁고, 편안한' 주민공간 – 누구나 주인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시간 : 직장인을 위한 저녁시간 및 휴일 개방
· 도구 : 사무용(컴퓨터, 복합기, 빔, 스크린, 회의보드, 문구류 등)
  마을부엌(간단한 한식류, 홈베이킹 등) 조리도구 비치
· 안내 : 공간 일일 담당자 배치로 불편사항 최소화
· 먹거리 : 커피 등 간단한 음료 제공

'작은변화' 를 꿈꾸는 공간– 혁신을 실험하는 공간

·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언택트(untact) 등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공간

주민공간 | 공간소개

공간		카페테리아	주방	교육장	모임실 (입식,좌식)	사무실
주요용도		소통공간	커뮤니티키친	교육·회의	교육·회의	사무공간
이용 시설	공간별	테이블 커피·음료 컴퓨터 2대	홈베이킹 간단한 한식요리 빔 프로젝트	테이블·의자 빔 프로젝트 회의용보드 노트북 음향	테이블,의자 빔 프로젝트 회의용 보드	센터장실 사무공간 직원 회의실 탕비실 창고
	공통	· 영상촬영장비 · 프린터기 · 이동식 음향				
최대 수용인원		20인	10인	35인	10인	7인
면적㎡ 474.309㎡		144.07	42	159.26	26.73	102.249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커피 한잔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시면
바리스타의 맛있는 커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동춘당 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청정함을 살리고 건물 내부에도 하나의 공원이
조성된 듯한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맛과 행복, 정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키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며, 맛을 통하여 나의 행복을 전파하는 공간입니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2개의 컴퓨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향으로 채워진 이 곳은 최대 10인 이하의
소수인원이 모여서 편안하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갖춰진 공간입니다.

이 곳은 편백나무의 향과 온돌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식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며, 온돌을
설치하여 **임산부,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장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교육들이 진행되었고,
대관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테이블과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푹신한 쇼파와 테이블이 있어
카페 테이블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간단한 대화나 미팅도 가능합니다.

3대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및 마을 활동가 육성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 교육홍보, 마을 만들기 지원 ·관리

주민 자치력 증대

· 사회적 자본(연대, 우정, 신뢰,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주민 자치력 증대 간접지원 사업
· 주민 자치력 강화 교육

센터시설 운영·관리

· 센터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회계 및 정산관리
· 시설관리, 장비, 비품 등 재산관리

2

공모사업 공고문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21-2호

2021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5일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Ⅰ 공모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1. 2. 5.(금) ~ 2021. 2. 26.(금) / 22일간

○ 접수기간 : 2021. 2. 8.(월) ~ 2021. 2. 26.(금) / 평일 09:00~18:00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10. 31.

○ 사업설명회 : 2021. 2. 8.(월) 14:00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문의, 070-4286-0824, 042-623-1500)

- 방문접수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3층)
- 온라인접수 : 공동체 공모사업 홈페이지(http://daejeonmaeul.kr)

○ 신청자격 : 대덕구 관내에 생활권을 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참고사항

▸주민이란 : 대덕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

▸주민모임 구성 ① 세대원(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② 3인(대표, 사업담당자, 회계담당자)은 대덕구 생활권내 주민이어야 함

▸단체란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포함
※ 단, 영리목적의 단체, 기관, 사업자는 제외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5.(금) : 사업공고 • 2.8.(월) : 사업설명회(온라인) • 2.8.(월)~2.26.(금) :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심사(서류·대면) 3.2.(화)~3.10.(수)	➡ 조정 컨설팅 3.11.(목)~3.18.(목)	➡ 결과발표 3.19.(금)
➡ 선정 후 교육 (정산회계, 온라인소통 활용 등) 3.22.(월)~3.26.(금)	➡ 협약체결 교부금 교부 3.22.(월)~3.31.(수)	➡ 사업추진 (교육, 네트워크, 상담, 모니터링, 토론회 등) 교부금 교부 시~10월
➡ 중간정산 7월	➡ 결과보고 11.15.(월)까지	➡ 공동체 한마당 11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II 사업대상 및 지원 사항

○ 일반공모사업

유 형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 업 예 산
모이자 사 업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이 모임을 구성하거나 학습, 마을조사를등 공동체 초기 사업 - 접수 전 사전 컨설팅 필수	- 마을활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 공동체별 100만원 이내 / 20팀 * 자부담 자율 편성
해보자 사 업	- 마을미디어, 마을부엌, 동네돌봄 등 주민(공동체)역량 강화 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	- 공동체별 500만원 이내 /10팀 * 자부담 자율 편성
가꾸자 사 업	- 마을 내 자원들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마을돌봄, 마을기록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최소 1개 이상이 마을공동체 활동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	- 공동체별 1000만원 이내 / 3팀 *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편성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 및 분야별 지원 공동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용가능	▸ 일반활동비, 사업운영비(홍보, 소모품, 임차료, 식비 및 다과비, 강사비 등) 등 ⇨사업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지원불가 (자부담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기부금, 시상금, 각종 상품권, 기프티콘 등) ▸ 사업과 관련없는 공동체 소유의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공동체) 운영경비 ▸ 용역성 경비(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지원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중복지원 불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동일사업으로 대전시 및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당해(2021년)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체 등의 고유사업	취지와는 별개로 단체, 기관, 사업장의 자체 프로그램 등
일반 강좌 운영	직업훈련, 어학,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일반 단순행사	단순 취미 동호회, 일회성 행사, 단순 반복적인 사업, 단순 캠페인 등
단순 복지사업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반찬배달,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 김장전달 등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특정 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 필수이행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계획	코로나 19 등 위기대응 활동 계획 포함(예, 비대면 활동 등)
신청 전	① 설명회(마을공동체 이해, 공모사업의 이해, 예산편성 기준,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② 상담
선정 후	회계정산 교육, 온라인 활용 소통 교육
조정컨설팅	심사 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 컨설팅
공모사업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모니터링, 중간정산, 결과보고 등
센터 운영프로그램	공동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토론회, 공동체 한마당 등

Ⅲ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첨부한 공모사업 양식 참고

① 사업 신청서

②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③ 주민참여명부

④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⑤ 사업계획서

Ⅳ 사전 상담 및 '찾아가는 마을상담'

○ 사전상담

- 상담기간 : 2021. 2. 8.(월) ~ 2. 26.(금)
- 사전신청 : https://forms.gle/BYHCCcaDaNQzzdq87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공모사업 설명,

○ '찾아가는 마을상담' 일정 및 장소

지역	신탄, 석봉 덕암, 목상	오정, 대화	송촌, 비래 법1, 법2, 중리, 회덕	야간(통합)
장소	더 나루 (대덕대로 1593번길 28)	대화동도시재생지원센터 (대화1길38, 대화어린이놀이터 주민공간)	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일정	2. 16.(화)	2. 17.(수)	2. 18.(목)	2. 18.(목)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 결과발표 : 2021. 3. 19.(금) 예정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 대덕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알림

※ 선정된 공동체(단체) 3인(대표, 사업담당, 회계담당)은 필수교육(회계정산, 온라인 활용 소통) 참석 / 교육일정 별도 통지

○ 심사항목

심사항목 (예시)		심 사 내 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Ⅵ 기타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제반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는 필요시 신청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신청 사업

자는 응모 정지 및 무효 처리함

○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사업 지원을 철회·환수 조치하며, 다음 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사항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 042-623-1500)로 문의 바람.

3

공모사업 집행기준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집행기준

○ 본 보조금 집행기준은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임

2 집행원칙

①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및 자료활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②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 신청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③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가 결정함.
- 통장거래시 발행하는 부대비용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인인증서 수수료, 이체수수료 등)은 자부담이 아닌 별도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일반공모 가꾸자 사업은 전체사업의 5% 이상 자부담 비율임.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은 경우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도 반환하여야 함

자부담 편성 및 집행기준 (예시-자부담 5%)
※ 선정 이후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보조금 신청액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액을 900만원의 5%인 45만원으로 감액편성 가능
※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50만원일 때 : - 자부담을 실제 40만원(80%)집행한 경우, 보조금도 80% 적용하여 2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지출내역)
- 심사 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현물이 아닌 현금만 인정함.

④ 이행보증보험 가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공동체는(1천만원 이상 보조금사업)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공동체 명의로 가입해야 함.
- 보험 가입비용은 개인부담으로 한다.

<u>※ 사업비에 편성된 자부담으로 집행불가</u>

[이행보증보험 가입]
- 피 보험자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 보험계약자 : 신청 단체명 또는 모임 대표자
- 보증 내용 : 2021년 000사업 이행보증
- 계약기간 : 협약일 ~ 사업종료일을 감안하여 설정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선정 및 금액 결정통지 공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단체의 직인과 대표자 신분증

⑤ 수익금의 활용

- 공동체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동체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 교부 목적 범위(공동체 공모사업) 내에서 공동체가 그 수익을 당해 연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
-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동체는 사업계획서에 필히 명시해야 하며, 수익금은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수익금 사용 증빙은 자부담 사용 증빙과 같게 한다.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지출내역)

⑥ 사업종료일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는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⑦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 추진 중 사업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문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500만원 이상 사업비의 경우는 사업비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적용한다.

(예시) 총 사업비 250만원인 경우 : 사업비 총액의 20%는 50만원

① 내부결재의 경우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보 조 금			
			최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감액	비고
사업운영비	다과비	마을회의	200,000	100,000	△100,000	*예산비목간 변경(×) *사업비총액의 20% 이내(×)
	다과비	마을총회	200,000	300,000	증100,000	

② 변경신청 승인 요청의 경우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보 조 금			
			최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비 고	비고
사업운영비	임차료	마을회의	550,000	0	△550,000	*예산비목간 변경(×) *사업비총액의 20% 이내(○)
	임차료	마을총회	0	550,000	증550,000	

③ 변경신청 승인 요청의 경우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보 조 금			
			최초 예산액	변경 예산액	비 고	비고
사업운영비	다과비	마을총회	200,000	120,000	△80,000	*예산비목간 변경(○) *사업비총액의 20% 이내(×)
활동비	일반활동비	마을총회	160,000	240,000	증80,000	

예시1) 기존에 마을회의에 편성했던 다과비 중 10만원을 지출하지 않아 마을총회에서 사용하고자 함.

→ **사업비 총액의 20% 미만, 예산비목간 이동이 아니라서 내부결재로 가능**

예시2) 기존에 마을회의에 편성했던 임차료 55만원을 지출하지 않아 마을총회에서 사용하고자 함. 이때 센터의 승인 공문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 변경이므로 센터와 논의 후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3) 기존에 사업운영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활동비로 내 사용하고자 할 때 센터의 승인 공문 없이 임의로 지출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예산비목(사업운영비, 활동비)간 예산 변경이므로 센터와 논의 후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총액의 20% 이하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공동체 내부결재 서류를 구비한 후 사용해야 하며 내부결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단순 산출기초 변경사항의 경우 내부결재 없이 진행)

  ※ 세부사업 내 새로운 비목이 생길 경우

  ※ 세부사업 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⑦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⑧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사업비 통장은 각각 대전시와 자치구 지정금고인 금융기관(하나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약 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공동체는 사업비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지출에 대한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⑩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때는 청구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

※ 활동비성 경비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예 강사수당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원 –21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0원 × 20%) + 특별징수세액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30,8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⑪ 기타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⑫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⑬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공동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공동체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담당사업부서는 ‘계약의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⑭ 기타 준수사항

- 공동체는 최종정산 보고서를 별도 지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담당사업부서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중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
- 담당사업부서는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 및 대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 편성세목 : 일반활동비, 홍보(영상제작)인쇄비. 소모품구입비, 임차료, 여비, 식비 및 다과비, 회의(심사)비, 원고비, 강사비, 공연비, 견학비, 인터넷통신우편료,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 예산비목별(편성세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예산비목별 / 편성세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반 활동비	‣ 시간당 최대 1만원 -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14시간, 월 최대 59시간 ※기획공모는 월최대 40시간이내 - 50인 이상 행사 진행 시 일반활동비 기준 활동비 지급 가능 ※ 예산편성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모이자, 해보자, 가꾸자)은 총사업비 20%이내	- 활동기록부(자필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할 경우), 이력서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8.8% 원천징수 - 50인 이상 행사의 경우 사전에 행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증빙은 활동확인서로 갈음 - 사전에 사업계획이 작성된 50인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만 대표자 3인 이외에도 지급 가능(단, 총액 기준은 준수)
사업운영비	‣ 공통기준 및 증빙 서류	- 견적서 및 명세서(총 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카드지출: 체크카드영수증 (명세가 없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사진 -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사진, 이체확인증 - 각종 청구서 자필이 아닐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총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
홍보(영상제작), 인쇄비	‣ 실비정산 - 공동체 활동 기록을 위한 동영상 제작 가능 ※ 홍보물에 지원사업명 및 대전시, 센터 로고 표기	- 홍보물 배포내역 및 홍보물 원본 - 증빙사진: 홍보 인쇄물 게시 및 홍보물 수량 보이는 사진,
소모품 구입비	‣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도서구입 총사업비 20%이내	- 증빙사진: 구매 물품 사진 및 활용(활동)사진 - 배송료는 최초구입시 1회에 한하여 물품구입비에 포함(반품, 교환, 환불시에는 자부담) - 자부담으로 지출할 경우 자부담에서 수수료 처리
임차료	‣ 실비정산 ※ 자가건물(물품) 임차, 단체 운영임대료, 관리비 불가	- 임차 증빙 사진 및 활용사진
여 비	‣ 시내여비 : 15인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 시외여비 : 실비 정산(대중교통 기준) - 숙박비 : 1인 1실 5만원 기준	- 임차 증빙 사진 및 활용사진 - 사용내역 증빙자료, 출장보고서 (지출 영수증 등)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 1인 1식 4천원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총사업비별 지급기준 - 200만원 이하 65%, - 2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 - 5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40% - 700만원 초과 30%	- 체크카드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활동 사진 등), 참석자 명부

예산비목별 편성세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회의비 심사비	‣ 2시간 이내: 10만원 ‣ 2시간 초과: 15만원	- 청구서(자필작성, 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활동 사진 등)
원고비	‣ A4 1매 1.3만원 - 여백(상하 15㎜, 좌우 25㎜), 글자 크기 12pt, 문단간격 160% - ppt 자료 2매는 A4 1매로 인정 ※ 강사의 강연원고는 지급 비대상	- 청구서(자필작성, 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고 사본
강사비	‣ 대면강의 - 일반1급 : 최대 37만원 ·1시간 25만원(1시간 초과 12만원) - 일반2급 : 최대 23만원 ·1시간 16만원(1시간 초과 7만원) - 일반3급 : 최대 13만원 ·1시간 8만원(1시간 초과 5만원) - 보조강사 : 최대 8만원 ·1시간 5만원(1시간 초과 3만원) ‣ 온라인 강의 - 녹화 동영상 강의 최대 10만원 ·질의답변 1건당 2만원 -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강의로 지급 ※ 강사기준은 22쪽 강사비 집행기준 참고	- 강사료청구서, 계좌이체확인증, 회차별 강의사진(강사 및 교육생 포함), 원천징수 영수증(해당할 경우),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8.8% 진행 ※ 청구서 자필로 작성시 통장사본, 신분증 미첨부 *대전 외 초빙 : 숙박비.식비.교통비는 실비범위 내 별도계상 가능 - 강사비 이체수수료 발생시 1회에 한하여 허용 - 자부담으로 지출할 경우 자부담에서 수수료 처리
공연비	‣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연1회 지급 가능 ※ 5인 이하(최대40만원) 6~10인 (최대50만원) 11인 이상(최대60만원)	- 청구서, 계좌이체확인증, 공연사진, 원천징수 영수증(해당할 경우),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8.8% 진행 ※ 청구서 자필로 작성시 통장사본, 신분증 미첨부
견학비	‣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인터넷 통신·우편료	‣ 온라인으로 사업 진행시 이용료 ‣ 우편택배 배송료	-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설비		
시 설 공사비	‣ 실비정산	-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 산 취득비	‣ 실비정산	- 검수(사)조서, 전후 사진,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3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반활동비

가. 일반공모 중 열매사업은 보조사업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나.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대표자, 회계담당자, 사업실무자 또는 공간운영자)의 마을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실행인력 중 1인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인에게 1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고, 기획공모 사업의 경우 월 최대 40시간까지 활동시간을 인정함.

라. 50인 이상 행사 진행 시 일반활동비 기준으로 활동비 지급 가능함

2. 사업운영비

가. 홍보(영상제작) 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대전시(자치구) 사업임을 표기(로고 포함)하고 TV, 라디오 교통광고 등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제작(구입) 하여야 함
- 공동체 활동 기록을 위한 동영상 제작 가능
- 총 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서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

※ 표기 예시

2021년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으로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로고)

나. 소모품 구입비

- 당해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소모품비 지출 가능

▸**자산이란,** 내구 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으로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며 관리대상이어야 함.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등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업부서에 사전승인을 받은 품목은 가능함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다.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라. 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15인이상, 2곳 이상 방문 이동시 버스 등 임차 가능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기준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마. 식비 및 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식비와 다과비를 합하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총 사업비 기준액	적용 한도액
2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65% 이내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50% 이내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40% 이내
700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30% 이내

바.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당해 마을사업 공동체 관계자(대표자 및 실무 관계자, 명부에 등재된 참여 회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사.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하며, 강사 원고료는 지급대상이 아님
- 당해 마을사업 공동체 관계자(대표자 및 실무 관계자, 명부에 등재된 참여 회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아.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가능.
-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강사비와 동일기준으로 지급 가능
- 녹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질의에 응답하는 응답 1회당 2만원(최대5건 10만원) 지급 가능
- 당해 마을사업 공동체 관계자(대표자 및 실무 관계자, 명부에 등재된 참여 회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대전외 지역에서 초빙하는 경우 숙박비·식비·교통비는 실비범위 내 별도계상 가능

구 분	강 사 기 준	지 급 액
일반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1H 25만원(1H 초과 12만원) - 최대 37만원
일반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1H 16만원(1H 초과 7만원) - 최대 23만원
일반 3급	해당분야 강의 이력 보유자 또는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마을활동가	1H 8만원(1H 초과 5만원) - 최대 13만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 보조, 퍼실리테이터, 가이드 등 1년 이상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일반 3급 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	1H 5만원(1H 초과 3만원) - 최대 8만원

자. 공연비

- 사업추진 시 공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서 지급 가능

※ 5인 이하(최대 40만원), 6~10인(최대 50만원), 11인 이상(최대 60만원)

차. 견학비

- 사업추진 필요 시 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카. 인터넷·통신우편료

-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이용료 지출 가능
-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통신우편(택배)비 지출가능

타.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3. 기타 보조금 지출 불가한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기부금, 시상금, 각종 상품권, 기프티콘 등)
- 사업과 관련 없는 공동체 소유의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인건비(활동비 제외)・사무용 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4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방법

1.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 함
2.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3.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함. 다만, 1차 산업(농업,어업,임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첨부)
   - 강사비・활동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용)하여야 함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함.(대상은 건별 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
   -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청구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자필 작성 후 이체(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사용)를 원칙으로 함
4. 사업비 집행은 지출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세부계획서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5. 회계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결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결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예시) 000행사 진행을 위해 마트에 다과비 총 예산 100만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할 경우 환수 대상임.

6.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7.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8. 영수증 보관방법

- 영수증은 사업항목별로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 장에 여러 세부사업의 지출내역이 혼합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함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세부사업별, 세목별, 일자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A4용지에 부착하여 정리하며 지출결의서에 첨부
- 영수증은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야하며, 한 건의 영수증 당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 중간정산 또는 최종정산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서식1-1】모이자 사업신청서 41
【서식1-2】모이자 사업계획서 42
【서식2-1】해보자 사업신청서 43
【서식2-2】해보자 사업계획서 44
【서식3-1】가꾸자 사업신청서 46
【서식3-2】가꾸자 사업계획서 47

● 공통서식

【서식5-1】주민(모임) 단체 소개서 50
【서식5-2】주민참여 명부 51
【서식5-3】개인정보처리(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52
【서식5-4】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협약서 표준(안) 53
【서식5-5】청렴이행 서약서(안) 56
【서식5-6】보조금 청구서 57
【서식5-7】지출결의서 58
【서식5-8】강사료 등 청구서 59
【서식5-9】회의록 60
【서식5-10】참석자명부 61
【서식5-11】출장보고서 62
【서식5-12】월별 활동기록부 64
【서식5-13】원천징수영수증 및 명세서 65
【서식5-14】물품검수조서 66
【서식5-15】예산변경 승인신청 공문 67
【서식5-16】예산변경 공문(내부결재) 68
【서식5-17】사업담당자변경 요청 공문 69
【서식5-18】세부 사업결과보고서 70
【서식5-19】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주민 인식변화 조사 71
【서식5-20】활동확인서 72

4

공모사업 신청 서식

서식 1-1	사업신청서(모이자)

( ) 에는 √표시하세요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모이자)

공동체명			연속 지원	신규( ) 연속( ) - *지원연도 및 사업명 기재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구체적인 행정지역을 기재)			
사업예산	보조금 신청금액(A)		비 고	
	원			
공동체 소 개	구 분	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운영진 수		총 회원수	
대표자 (주민1)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회계 담당자 (주민2)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사업 담당자 (주민3)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위와 같이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공동체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신청구비서류 1.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2. 주민참여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사업3인(대표, 회계, 사업담당자) 당해연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마을계획에 참여하거나 공모신청 중이면 중복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서식 1-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모이자)

공동체명		
제안사업명		
모이게 된 계기와 사업 제안배경	*※ 주민모임을 하게 된 계기와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기대효과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어떤 이유로 마을에 필요합니까?
세부사업 ①		1.대상: 2.내용: 3.방법:
세부사업 ②		1.대상: 2.내용: 3.방법:

예산비목		편성세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식비 및 다과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세부사업 ①			
	세부사업 ②			
소계				

서식 2-1	사업신청서(해보자)

( ) 에는 √표시하세요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해보자)

공동체명			연속 지원	신규( ) 연속( ) - *지원연도 및 사업명 기재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구체적인 행정지역을 기재)				
사업예산	총사업비(A+B)	보조금신청액(A)	자부담(B)		
	원	원	원		
공동체 소 개	구 분	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운영진 수		총 회원수		
	단체주소	※단체만 기재	단체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회계 담당자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사업 담당자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위와 같이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동체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신청구비서류 1.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2. 주민참여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사업3인(대표, 회계, 사업담당자) 당해연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마을계획에 참여하거나 공모신청 중이면 중복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서식 2-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해보자)

공동체명		
제안사업명		
전년도 사업 평가		*※ 전년도 모이자 사업 참여한 모임(단체)인 경우 작성*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주민모임을 하게 된 계기와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기대효과		
사업개요	추진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어떤 이유로 마을에 필요합니까?
세부사업 ①		1.대상: 2.내용: 3.방법:
세부사업 ②		1.대상: 2.내용: 3.방법:
세부사업 ③		1.대상: 2.내용: 3.방법:

	구 분	합계	식비 및 다과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예산계획	보조금	원	원	원	원	원
		100%	%	%	%	%
	자부담	원	원	원	원	원
		100%	%	%	%	%

예산비목		편성세목	보조금		자부담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합 계						
식비 및 다과비						
활 동 비						
사업운영비	세부사업 ①					
	세부사업 ②					
	세부사업 ③					

서식 3-1	사업신청서(가꾸자)

( ) 에는 √표시하세요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가꾸자)

공동체명			연속 지원	신규( ) 연속( ) - *지원연도 및 사업명 기재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구체적인 행정지역을 기재)				
사업예산	총사업비(A+B)	보조금신청액(A)	자부담(B)		
	원	원	원		
공동체 소 개	모임(단체) 구분	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운영진 수		총 회원수		
	단체주소	※단체만 기재	단체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회계 담당자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사업 담당자	성 명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위와 같이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동체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신청구비서류 1.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2. 주민참여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사업3인(대표, 회계, 사업담당자) 당해연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마을계획에 참여하거나 공모신청 중이면 중복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서식 3-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가꾸자)

공동체명		
제안사업명		
전년도 사업 평가		※ 전년도 해보자 사업 참여한 모임(단체)인 경우 작성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주민모임을 하게 된 계기와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기대효과		
사업개요	추진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어떤 이유로 마을에 필요합니까?
세부사업 ①		1.대상: 2.내용: 3.방법:
세부사업 ②		1.대상: 2.내용: 3.방법:
세부사업 ③		1.대상: 2.내용: 3.방법:
세부사업 ④		1.대상: 2.내용: 3.방법: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계획		
유형	함께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	구체적 참여 및 지원 내용

※ 함께하는 주민 모임 및 단체 : 공공기관, 기타 지역 단체

예산계획	구 분	합계	식비 및 다과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보조금	원	원	원	원	원
		100%	%	%	%	%
	자부담	원	원	원	원	원
		100%	%	%	%	%

예산비목		편성세목	보조금		자부담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합 계						
식비 및 다과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세부사업 ①					
	세부사업 ②					
	세부사업 ③					
	세부사업 ④					

서식 5-1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 ( ) 에는 √표시하세요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단체현황	회원수	명	운영진 또는 상근자수	명
설립목적	○ ○			
단체 주사업	○ ○ ○			
모임 또는 단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체계			있음( ) 없음( )	
정기회의	회의 종류		평균 빈도수	평균 참여자수
			월/주 회	명
			월/주 회	명
모임 또는 단체 운영규정	○ 단체 내에서 합의된 운영규정 등이 있나요? 있음( ), 없음( ) - 만약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모임 또는 단체 활동내용	주요활동 내용	○ ○ ○			
	최근5년 지원사업 운영내역 (2016~2020 공동체공모 사업 포함)	지원처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년 월~년 월		천원
			내용		
					천원
			내용		
					천원
			내용		
					천원
			내용		
		(예) 대전시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명), 2020.2~12, 지원액 (예) 대덕구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사업명), 2019.2.~11. 지원액			

기타사항	2021년도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 지원금 신청여부 : 유 □ 무 □

서식 5-2	주민참여 명부

주민참여 명부

연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거주지역	담당직무
1					구 동	대표자
2						회계담당자
3						사업담당자
4						참여희망자
5						〃
6						
7						
8						
9						
10						
11						
12						
13						
14						
15						

※ 주민참여자 명부에 기재된 구성원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 인원 등 요건사항은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붙임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서식 5-3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대전광역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대전광역시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대전광역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까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전광역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대전시,동구,서구,중구,대덕구,유성구, 공동체업무 위탁기관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동체사업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본 동의서는 선정 후 협약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5-4	협약서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협약서(안)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대표자) (이하 “공동체”라 한다)는 2021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원 (금 원)
3. 사업기간 : 2021. . ~ 2021. 10. 3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체”의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센터”과 “공동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공동체”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공동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 종교 활동 및 영리활동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센터”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공동체”에게 요구한 경우 “공동체”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센터”는 “공동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후 “공동체”에게 바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체”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체”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동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전용통장을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유형 중 가꾸자 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은 보조금 총 교부액의 5% 자부담(자기자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중간실적보고서는 7월말일까지(모이자 사업은 제외),

최종 사업추진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는 11월 15일까지 "공동체"는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공동체"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공동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공동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센터"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동체"가 진다.

② "공동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센터"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체"는 "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는 "센터"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동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공동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동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공동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센터"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공동체"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공동체 사업 공동수행) "센터"는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의 관리 감독 및 교육·평가 등 사무의 일부를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광역시가 출연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센터"와 "공동체"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센 터	공 동 체
명 칭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명 칭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3층(송촌동)	주 소 :
대표자: 홍 은 영 ㊞	대 표 자 : ㊞
	주 소 :
	회계담당자: ㊞
	주 소 :
	사업담당자: ㊞

서식5-5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안)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 단체의 대표자, 회계책임자등 참여자 모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회계담당자 : (서명)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서식5-6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 청 구 액 : ₩ (금 원)

○ 사 업 명 :

상기금액을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0년 월 일

청구자 모임(단체)명 :

대 표 자 : (인)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서식5-7	지출결의서

□ 에는 √표시하세요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번호						
공 동 체 명 (마 을 명) (모임단체명)			결재	담당자	대표자	
세 부 사 업 명						
편 성 세 목			지출방법	카드□	계좌이체□	
지 출 금 액	금 원정	보조금□	지 출 일			
	(₩)	자부담□	상 호			

지출내역	
-내 역	
-행 사 명	
-행사일시	*실제 행사한 날짜와 시간 기록*
-산출기초	*1인 단가X 인원=사용금액*
-비고 : *특이 사항을 있을 경우 적어 주세요*	

*지출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일 동일)
*산출기초 : 회의비 및 식대, 다과비일 경우 단가X인원 / 유류대일 경우 유류비 작성

서식5-8	강사료 등 청구서

□ 에는 √표시하세요

[ ]청구서

사 업 명			
주 제			
일 시		강의시간	
강 사 명	홍길동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 속 및 직 위			
금 액	100,000원	원천징수액	
입 금 계 좌	계좌번호/은행명		

※ 첨부자료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자료(공연일 경우 제외), 강의사진 또는 공연사진
(* 자필이 아닐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단체는 강연자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단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세무신고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본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5-9	회의록

회 의 록

회의명	안전마을 만들기 행사 준비회의	일시	2021.07.28. 16:00~18:00
참석인원	*회의에 참석한 인원 수	장소	00도서관
안건	행사 전 마무리 회의		
내 용	※ 회의 안건에 관한 진행과정과 내용, 결정사항등을 작성해주세요		
사진	※ 참여자 명부(개인별 서명) 및 회의사진 반드시 첨부		

붙 임 : 참석자 명부 1부.

모임명(단체명)

서식5-10	참석자 명부

참석자 명부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연락처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행사 안내시 사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3년

※ 초상권 사용동의
- 해당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 추후 발간될 기록집 및 후기 홍보 게시물 (SNS, 홈페이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시: 2021년 월 일 (00:00~00:00)

연번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5-11	출장보고서

출 장 보 고 서

결재	담당자	결재권자

출장지		출장자	
출 장 기 간	2021. 11. 12 ~ 2021. 11. 13 (　　일간)		
방문처		방문목적	
숙박지 (숙박명)			

동행자	성　　명	숙 박 비	
		교 통 비	
		식　　비	
		기　　타	
		계	

출장 보고	
출장 사진	별첨(뒷면)

모임명(단체명)

(붙임)

출 장 사 진

서식5-12	활동기록부

00월 활동기록부

❑ 마을사업 활동가 인적사항

○ 활동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계좌번호 :

연번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			
2			-			
3						
4						
5						
6						
7						
8						
9						
10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5-13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63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8·69·71~76 제외) 71 상금 및 부상 72 광업권 등 73 지역권 등 74 주택입주지체상금 75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⑯ 소득세	⑰지방소득세	⑱농어촌특별세	⑲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⑯란부터 ⑲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서식5-14	물품검수조서

물 품 검 수 조 서

업 체 명				
물 품 내 용		결재	담당자	대표자
검 수 일	년 월 일			

1. 물품활용계획

2. 물품사진 (담당자, 회계담당자, 대표 중 1인 이상의 검수 활동사진이 들어가 함)

* 총 구입 물품 금액이 1,000천원 일 경우 작성

서식5-15	예산변경 요청 공문

모 임 명

수신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경유

제 목 ○○○ 사업 예산변경 승인신청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모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마을계획 수립사업
2. 총사업비 : 2,500,000원
3.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A-B)	비 고
활동비	일반활동비	마을회의	160,000	240,000	증80,000	마을회의 활동비 추가 필요
사업운영비	다과비	마을회의	200,000	120,000	감80,000	
합 계			360,000	360,000	0	

지침 13쪽 예시) ②의 경우로 마을계획 수립 사업(총사업비 250만원) 예산비목을 변경하는 경우임

모 임 명 (단 체 명)

담당자 ○○○ 검토자 ○○○ 대 표 ○○○

협조자

시 행 년 월 일 접수

우 대전광역시 ○구 ○로 ○번길 / http://www

전화 전송 / 이메일 / 공개

서식5-16	예산변경 공문(내부결재)

모 임 명(단 체 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공동체명) 사업 예산변경

○○지원사업으로 모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 총사업비: 2,500,000원
3. 변경사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의을 6월 25일에 기획했으나, 일정상 모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다음 달 마을총회에서 다과비를 추가 지출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4. 변경내역

(단위: 원)

예산비목	편성세목	세부사업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 내용
사업운영비	다과비	마을회의	200,000	100,000	감100,000	
〃	〃	마을총회	200,000	300,000	증100,000	
합 계			400,000	400,000	0	

모 임 명 (단 체 명)

담당자 ○○○(서명/날인) 회계담당자 ○○○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협조자
시 행 년 월 일 접수
우 대전광역시 ○구 ○로 ○번길 / http://www
전화 전송 / 이메일 / 공개

서식5-17	담당자변경 요청 공문

모 임 명(단 체 명)

수신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경 유 마을팀장
제 목 (공동체명) 사업 담당자 변경

2021년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회계(사업)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공동체명 :
2. 변경내역
 - 변경 전 : ○○○ 회원
 - 변경 후 : ○○○ 회원
3. 변경사유 : 개인 사정 (○○○님 동호회 지도시간 확보)

모 임 명 (단 체 명)

담당자	○○○(서명/날인) 회계담당자 ○○○ (서명/날인) 대 표 ○○○(서명/날인)		
협조자			
시 행	년 월 일	접수	
우	대전광역시 ○구 ○로 ○번길	/	http://www
전화	전송	/ 이메일	/ 공개

서식5-18	세부사업별 결과보고서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결과 보고서

세부사업명			
일 시	2021. 0. 00. 0요일 10:00~13:00	장 소	
참여인원	명		
진행일정			
진행내용			
성 과	-		
총 사용액	(각각 사용한 금액 편성세목별로 작성)		
사진			

서식5-19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주민 인식변화 조사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주민 인식변화 조사

본 조사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그렇지 않다 ←| • |→ 그렇다				
마을에 대한인식	우리 마을을 잘 알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마을에 관심이 많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민 주도성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마을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마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동체성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임을 통해 마을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많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동체 활동평가	진행한 공동체 활동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년에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에 애정이 생겼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관계망	누구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알게 되었나요?	( )				

서식5-20	활동확인서

활동확인서

성 명	ㅇ ㅇ ㅇ				
주 민 번 호	000000-0000000				
계 좌 번 호	계좌번호 (은행명)				
주 소	대전광역시 ㅇ구 ㅇㅇ동 (동까지만 작성)				
세부사업명					
활 동 일	2021. 0. 00.(요일)	활동시간	0시간	활동장소	
청 구 금 액	₩000,000(금일십만원정)				
활 동 내 용					
활 동 사 진					

※ 첨부자료 : 이체확인증

2021. . .

성명 (서명)

공모사업 선정 후 필수 첨부서류 및 발급방법

▸고유번호증 모이자는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등록 방법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 이행보증증권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방법

▸ 협약체결시 필요 사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방법

① 신청 대상 : 2021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단체
(모이자 사업은 제외)

②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

- 단체 대표자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함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음 / 국세기본법
- 회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정관 등의 내용을 확정지어야 함

*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 검토 후 발급

-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 및 지출 등의 통상적 업무 처리와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단체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③ 신청 시 제출서류 ※ 별첨 서식 참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최초 등록 시) / 서식 1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기존에 등록된 단체의 정정 신고) / 서식 2
-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칙) / 서식 3
- 대표자(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식 4 ~ 6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사본 / 서식 7

④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

【서식 6-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북대전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북대전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정관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0000』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서를 해결책과 다짐을 포함하여 기술

예) 우리단체는 시민 스스로의 깨달음과 참여에 기초한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사회변화를 꾀하여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우리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상담 사업
3.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의 조성 사업
4.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6. 00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사업
7. 기타 우리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 실제 목적 사업을 기술하면 됨.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기재해서는 안됨

제4조 (소재) 우리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회원가입) ①우리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우리단체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우리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단체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우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1인과 운영위원 0인 이내,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권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대표는 운영위원 중에 선임하며,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감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우리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우리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다.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우리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이해상충) 임원은 우리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0조 (총회) 총회는 우리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총회는 연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대표자가 소집하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우리단체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되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 (재정) 우리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우리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보고) 우리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8조(이익배분 금지) 우리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해산) 우리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할 경우 우리단체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1조(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의 제정) 우리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발기인회)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우리단체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년 00월 00일 창립총회제정

【서식 6-4】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작성자 : 000단체 발기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5】

임　　명　　장

성　　명　홍 길 동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을 정관 및 창립총회에 결의에 따라
(단체명)의 대표로 임명합니다.

20　.　.

단 체 명

【서식 6-6】 000단체사용 인장계

000단체의 사용 인장

000단체의 사용 인장은 아래의 것을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직 인

20 년 월 일

0000단체 대표 (도장)

.

【서식 6-7】

<table>
<tr><th colspan="4">000단체 창립총회 회의록</th></tr>
<tr><td>일 시</td><td>년 월 일 00시 개회~ 00시 폐회</td><td>장 소</td><td></td></tr>
<tr><td>성원보고</td><td colspan="3">발기인 총 00명 중 00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립되어 개회함</td></tr>
<tr><td>안 건</td><td colspan="3">1. 정관 제정의 건
1. 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임의 건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이 건
1. 기타</td></tr>
<tr><td>회의 결과</td><td colspan="3">1. 정관 제정의 건
발기인 000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임시의장000이 회중에게 의견을 물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2. 대표, 운영위원, 감사 선임의 건
발기인 000이 임원 후보자로 대표 000, 운영위원 000,000,000, 감사 000을 추천함.
임시 의장이 추가 추천이 있는지 묻되 다른 추천이 없어 회중에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임원을 선임.
대표 000 등 선출된 임원들이 돌아가며 임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취임 승낙의사를 밝힘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의 건
운영위원 000이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하고 회중 의견을 물으니 회원000이 원안을 그대로 받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4. 기타
회원 000이 서기록 작성을 대표와 운영위원 000, 000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고 회중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회의록 작성 위원을 3인으로 선임함.</td></tr>
<tr><td>회 의 록
확 인</td><td colspan="3">000단체 창립총회 회의록이 사실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발기인 이름 서명</td></tr>
</table>

【서식 6-8】

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부동산 표시 및 용도	
소 재 지	
용 도	

임 대 인	홍길동 800101-1101100 서울 강남구 잠실동 0000 201호
임 차 인	000단체(대표 이순신 220923-1816813 주소)
임대차 기간	2010 년 2 월 2 일부터 2014 년 2 월 1 일 까지
임 대 료	무상

위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홍 길 동 (인)
임 차 인	이 순 신 (인)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방법

① 주민모임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을 함께 기재한 통장 개설

❊ 예시) ○○○(단체명 또는 주민모임명) 대표 홍길동

② 통장개설 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해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③ 대덕구청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 표 자	• 본인 실명확인증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 • 도장(거래,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대 리 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 실명확인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 •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 • 위임장 • 도장(거래,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동본

※ 유의사항

1.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

▶ 이행보증증권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가입

-서울보증보험 대전점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LH공사빌딩 14층)에서 가입
- 피 보험자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 보험계약자 : 신청 공동체(단체) 명
- 보증내용 : 2021년 대덕구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행보증
- 계약기간 : 협약일~2022년 1월 31일
- 구비서류 : ① 사업선정 및 금액 결정통지 공문 사본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단체(공동체)의 직인과 대표자 신분증
-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자부담)

▶ 협약체결시 필요 사항

- 발급된 단체명의 통장사본, 고유번호증, 단체 도장(고유번호증 일치)
- 이행보증증권 사본(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 대표자, 회계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함께 협약 체결 (개별 도장 필요)
- 협약서(안)
-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대덕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협약서(안)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대표자) (이하 “공동체”라 한다)는 2020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원 (금 원)
3. 사업기간 : 2021. . ~ 2021. 10. 3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체”의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센터”과 “공동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공동체”는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공동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 종교활동 및 영리활동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센터”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공동체”에게 요구한 경우 “공동체”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센터”는 “공동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후 “공동체”에게 바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체”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체”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동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전용통장을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유형 중 가꾸자 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은 보조금 총 교부액의 5% 자부담(자기자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중간실적보고서는 8월말일까지(모이자 사업은 제외), 최종 사업추진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는 11월 15일까지 “공동체”는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

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공동체"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공동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공동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공동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센터"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동체"가 진다.

② "공동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센터"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체"는 "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는 "센터"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동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공동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공동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동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센터"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공동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실행계획

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 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센터” 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공동체” 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센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공동체 사업 공동수행) “센터” 는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의 관리 감독 및 교육·평가 등 사무의 일부를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광역시가 출연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센터” 와 “공동체” 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센 터		공 동 체	
명 칭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명 칭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3층(송촌동)	주 소 :	
대표자:	홍 은 영 ㊞	대 표 자 :	㊞
		주 소 :	
		회계담당자:	㊞
		주 소 :	
		사업담당자:	㊞

청렴이행 서약서(안)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 단체의 대표자, 회계책임자등 참여자 모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회계담당자 : (서명)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보조금 청구서

○ 청 구 액 : ₩ (금 원)

○ 사 업 명 :

상기금액을 대덕구 좋은마을만들기 사업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1년 월 일

청구자 모임(단체)명 :

대 표 자 : (인)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 귀하

5

공동체 공모사업
DB시스템 이용 매뉴얼

홈페이지 가입 방법

01 홈페이지(daejeonmaeul.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02 이메일 회원가입 또는 SNS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03

약관 확인 후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04 회원정보를 입력하신 후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05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사용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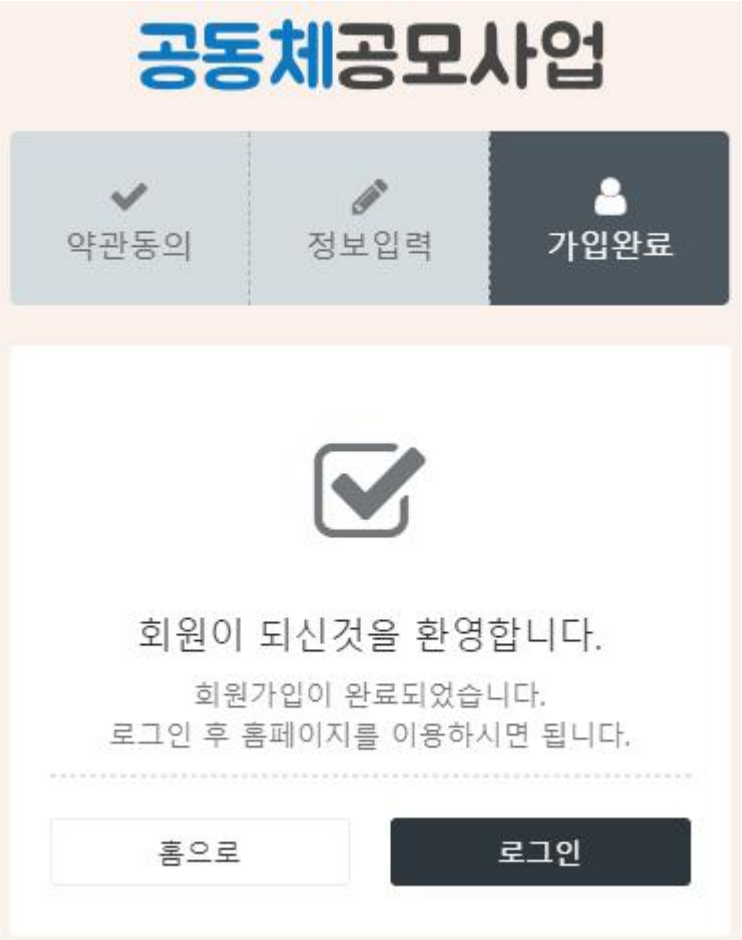

공모사업 소개

01 공모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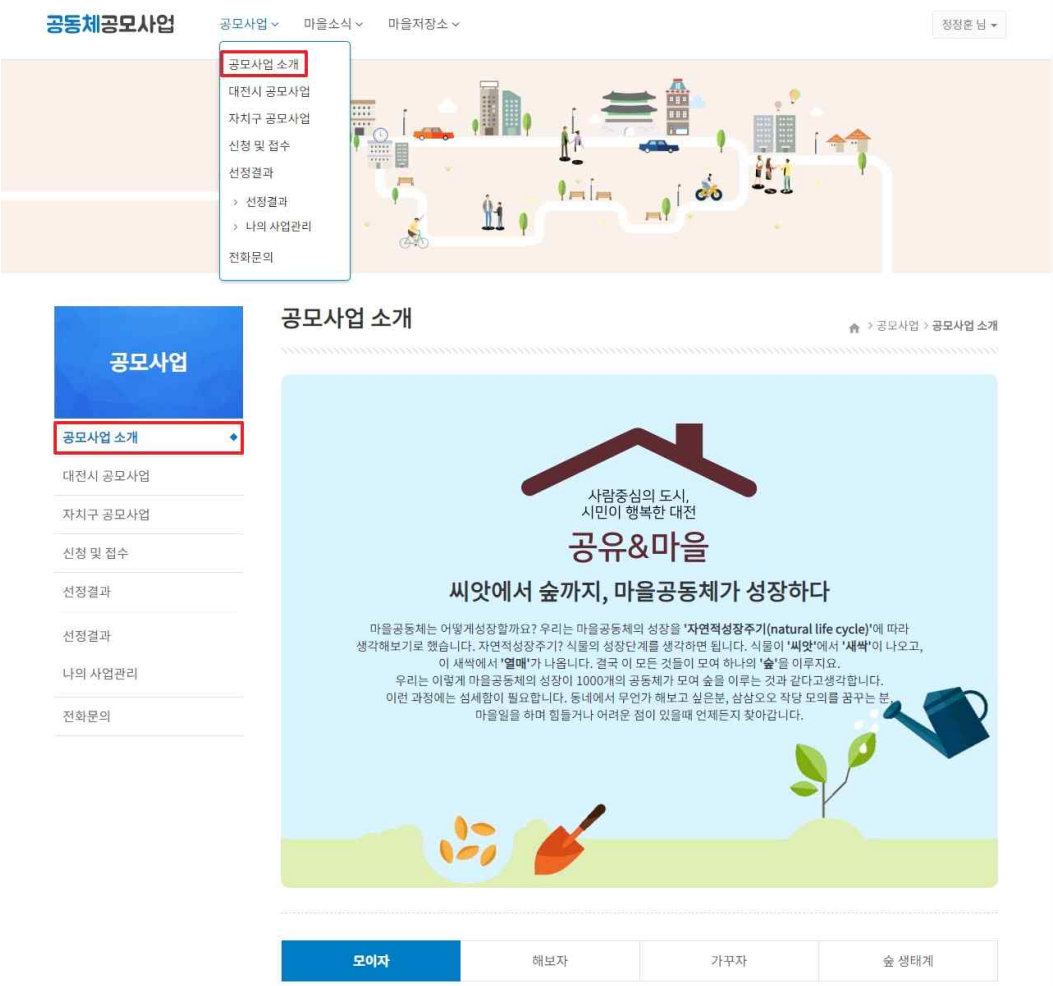

대전시 공모사업

01 대전시 공모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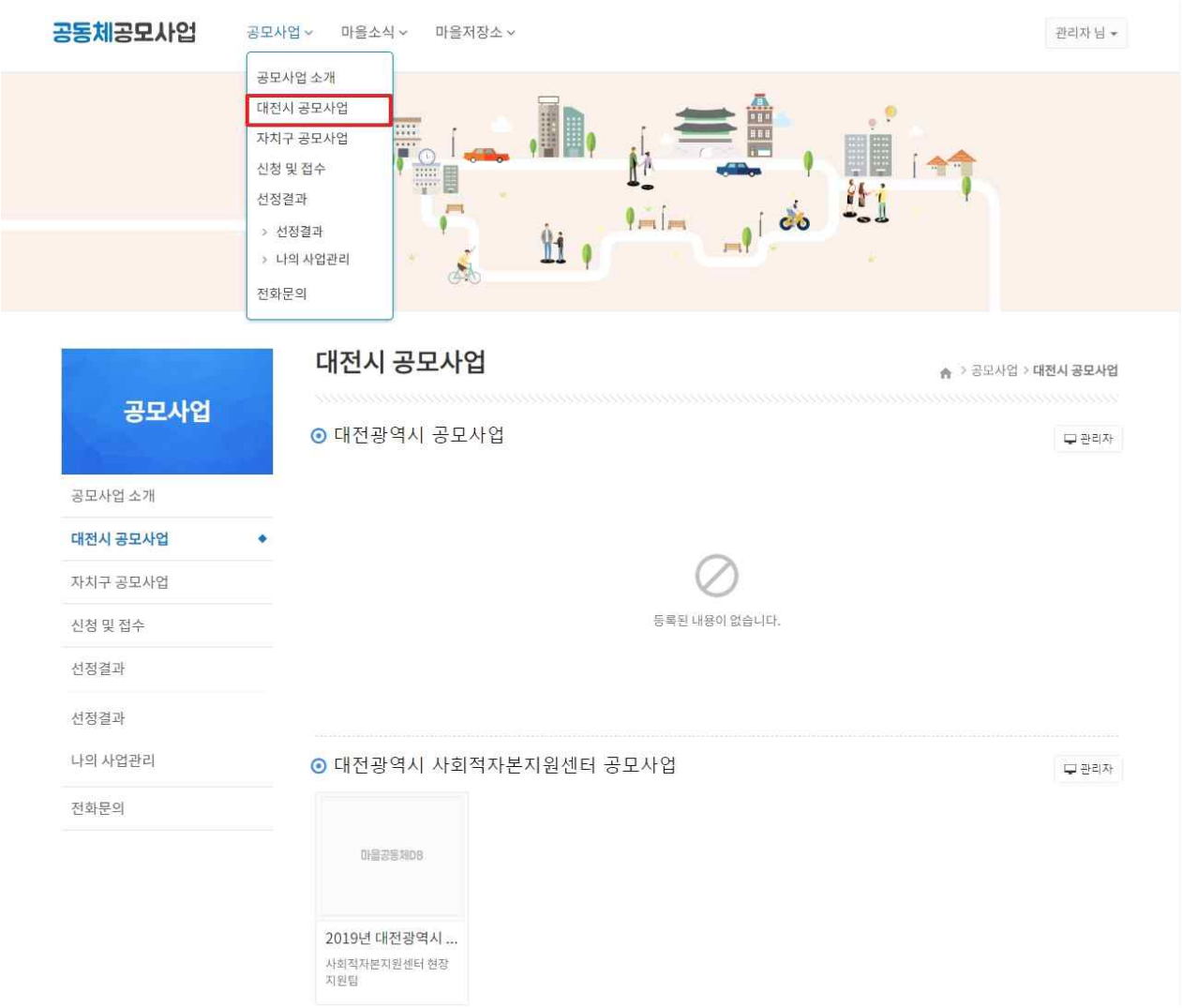

자치구 공모사업

01 자치구 공모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 입니다. 각 구별, 사업단계별 공모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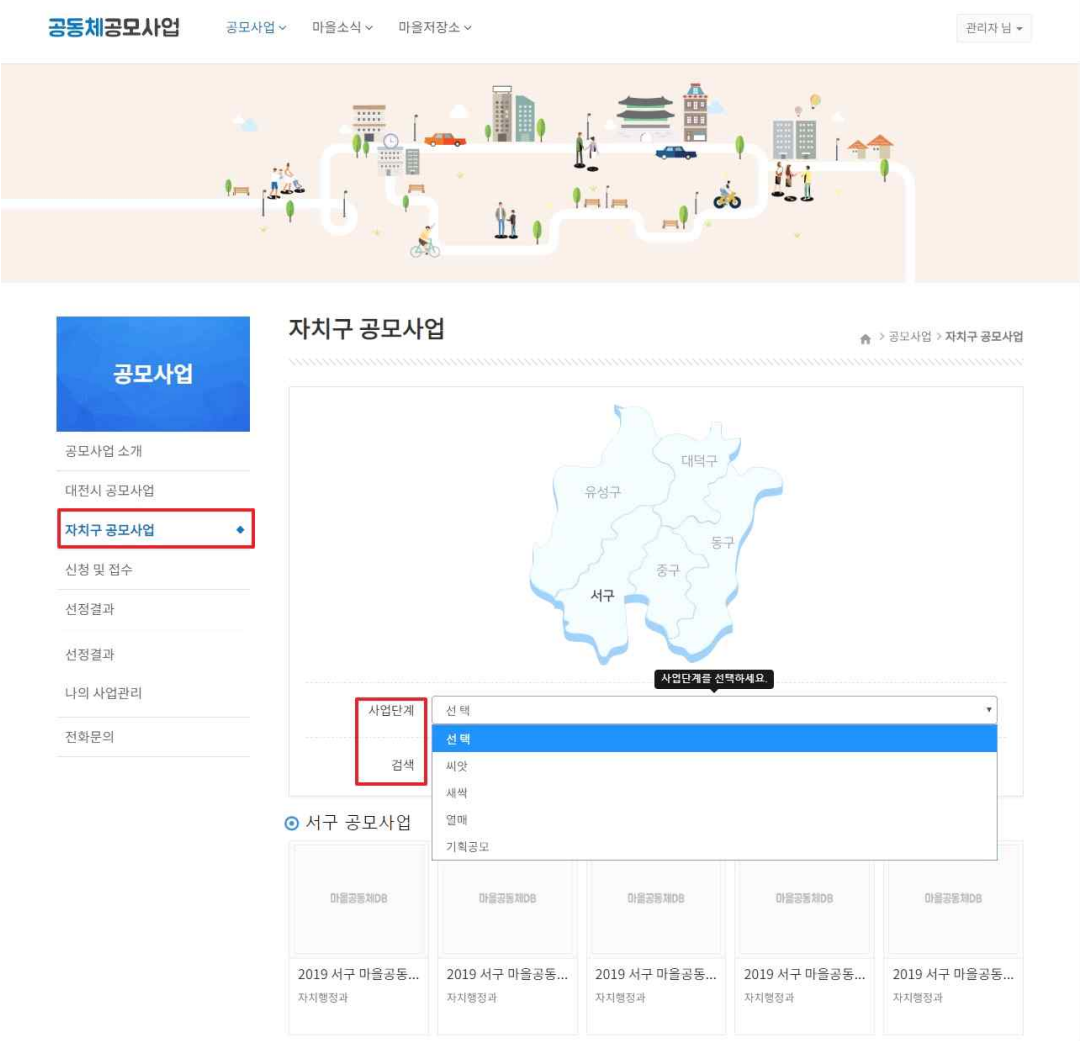

02 조건 검색 시 화면입니다.

신청 및 접수

01 상단 메뉴 공모사업 에서 **신청 및 접수**를 눌러주세요.

- 메인페이지에 **모집중인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접수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02 현재 모집 중인 대덕구 공모사업을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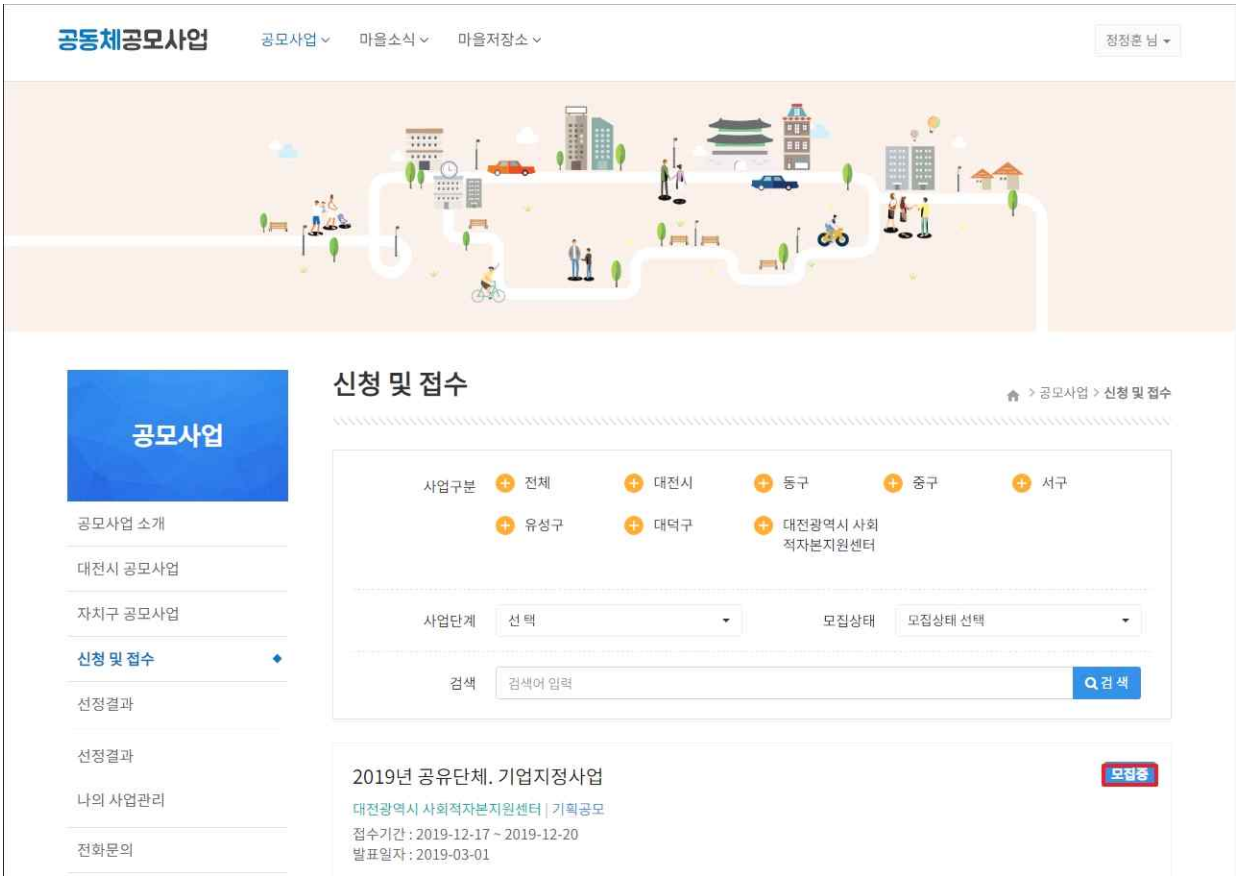

03 선택하신 공모사업 페이지에서 **모집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04 확인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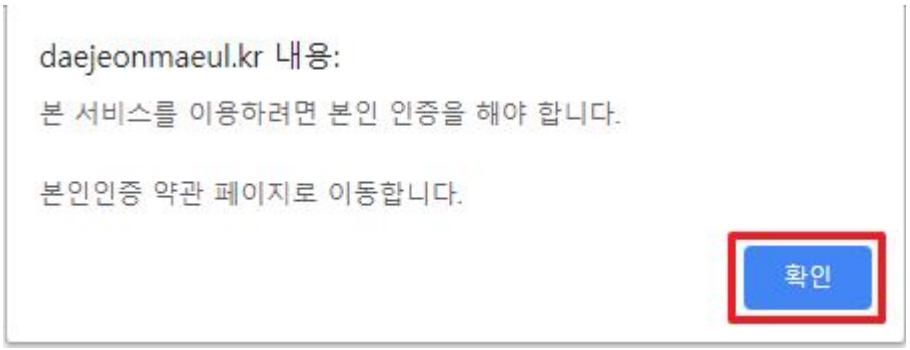

05 이용약관을 읽어 보신 후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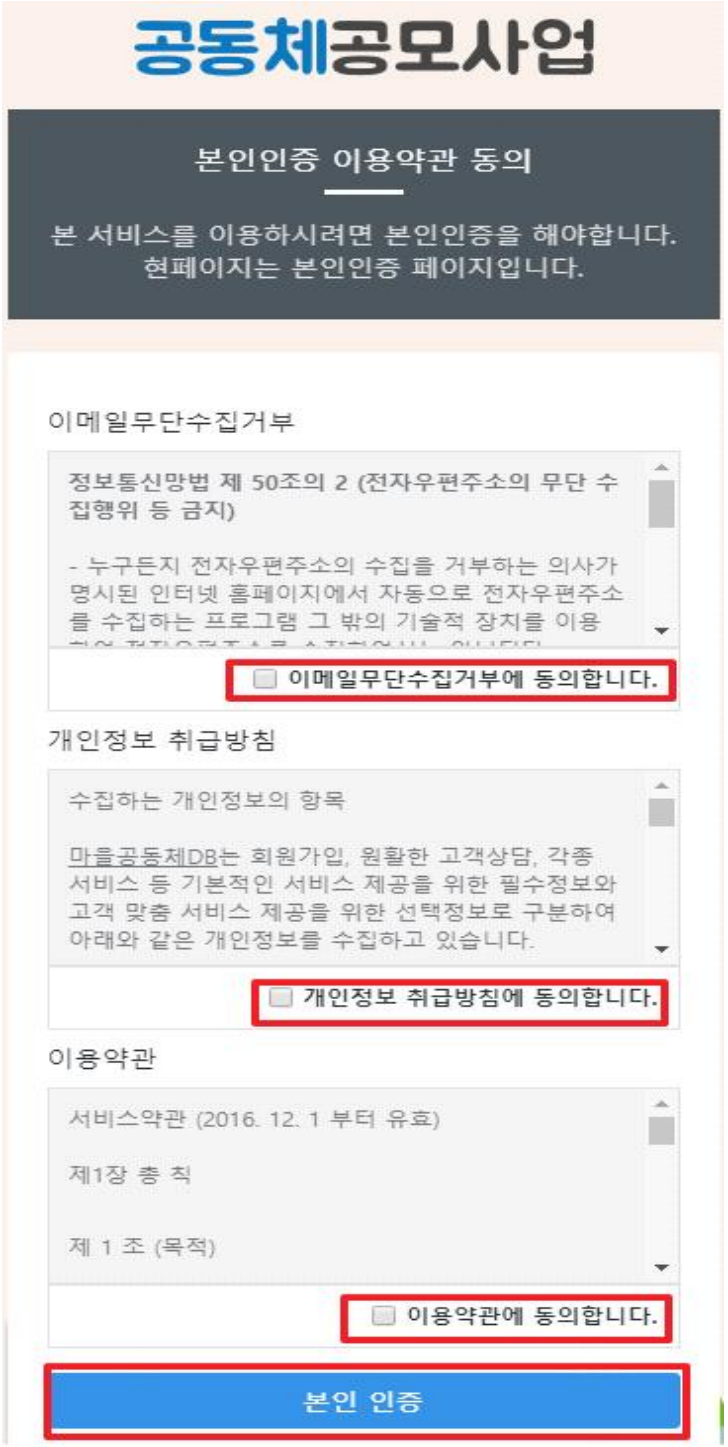

06

PG사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완료해주세요.

- **통신사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고 **시작하기 버튼** 을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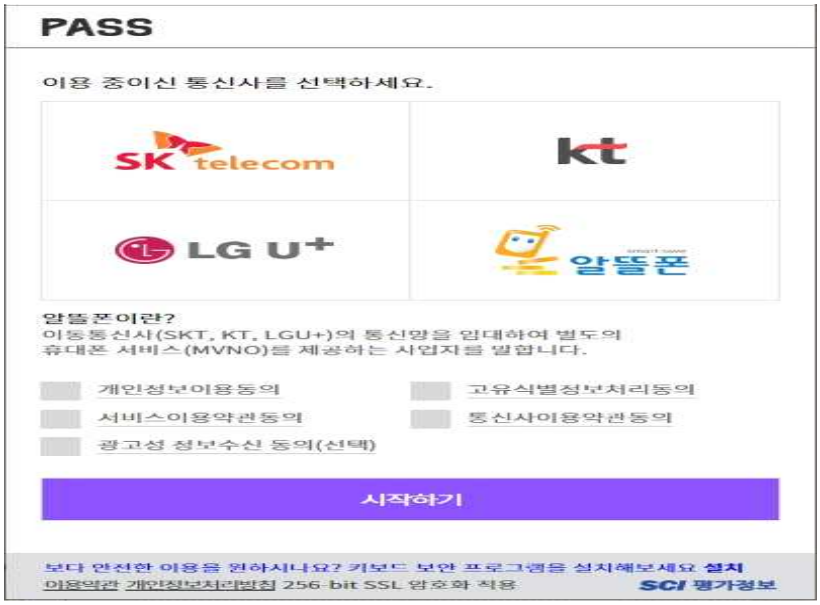

- **인증방법** 선택 후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문자인증]**을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문자로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는데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 을 눌러주세요.
-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면 **[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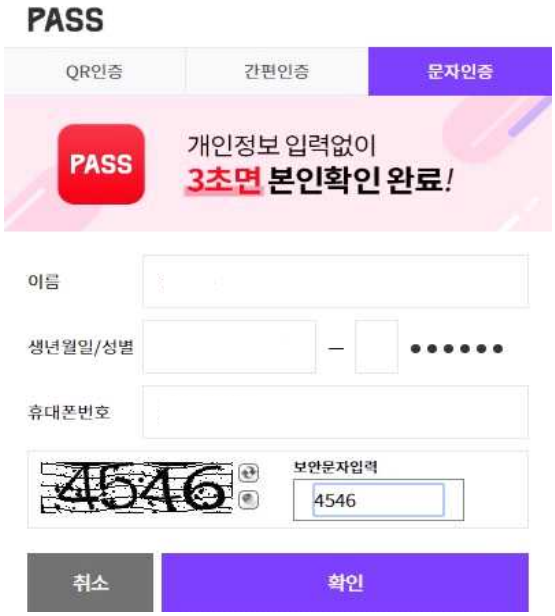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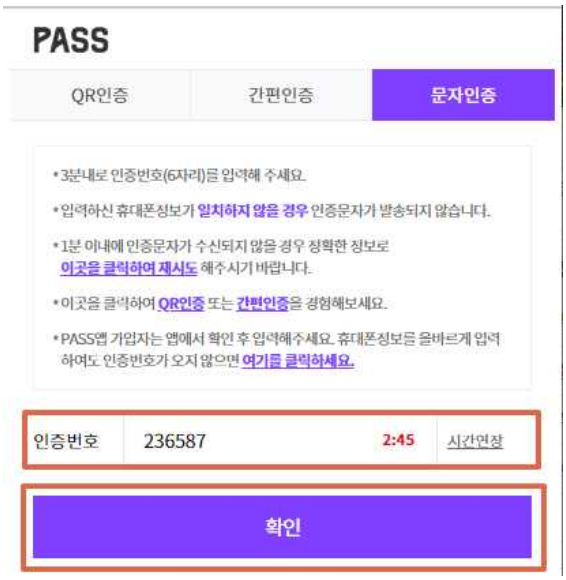

07 본인인증을 완료 후 **모집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08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세요.

-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임시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저장 작성 된 글 버튼**을 누르면 **임시저장된 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임시저장 글 관리** 리스트에서 글 선택 시 **임시 저장 된 글을 불러옵니다.**

09 사업계획서를 안내에 따라 작성해주세요.

1.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필수)(최소 1개이상 입력)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입력(최소 1개이상 입력)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입력(최소 1개이상 입력)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입력(최소 1개이상 입력)

2. 사업개요 (필수)

* 추진기간	0000-00-00 ~ 0000-00-00		
* 사업지역(구)	사업지역(구) 선택	* 사업지역(동)	사업지역(동) 선택
* 사업대상	사업이 포괄하는 주민대상을 기재		
*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첨부파일	파일선택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업로드하려면 클릭하십시오. * 삭제 시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3. 세부추진계획 (필수)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어떤 이유로 마을에 필요합니까? (대상/내용/방법)
항목	하위항목			
사업 ⊕⊖	세부사업1	세부사업명을 입력해주세요.	시작일자 0000-00-00 종료일자 0000-00-00	대상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방법을 입력해주세요.

필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가 혹은 삭제 하려면 +, -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사업예산 (필수)(※업무추진비 : 보조금의 10%이내 / 식비총액 : 전체 보조금의 10%이내)

예산과목		편성세목	보조금		자부담	
항목	하위항목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활동비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0	입력해주세요.	0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0	입력해주세요.	0
소계				0		0
사업운영비	세부사업1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0	입력해주세요.	0
소계				0		0
업무추진비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0	입력해주세요.	0
소계				0		0
시설비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0	입력해주세요.	0
소계				0		0
합계				0		0

필요에 따라 **사업예산을 추가 혹은 삭제 하려면 +, - 버튼**을 눌러주세요.

☑ 단체정보 (있으면 체크)

*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입력	성별	성별 선택
* 생년월일	생년월일 입력	* 연락처	연락처 입력
이메일	이메일 입력		
주소	우편번호 입력 검색		
	주소		
	상세주소 입력		
* 거주지역(구)	거주지역(구) 선택	* 거주지역(동)	거주지역(구)를 선택해주세요

단체정보가 있다면 체크 후 입력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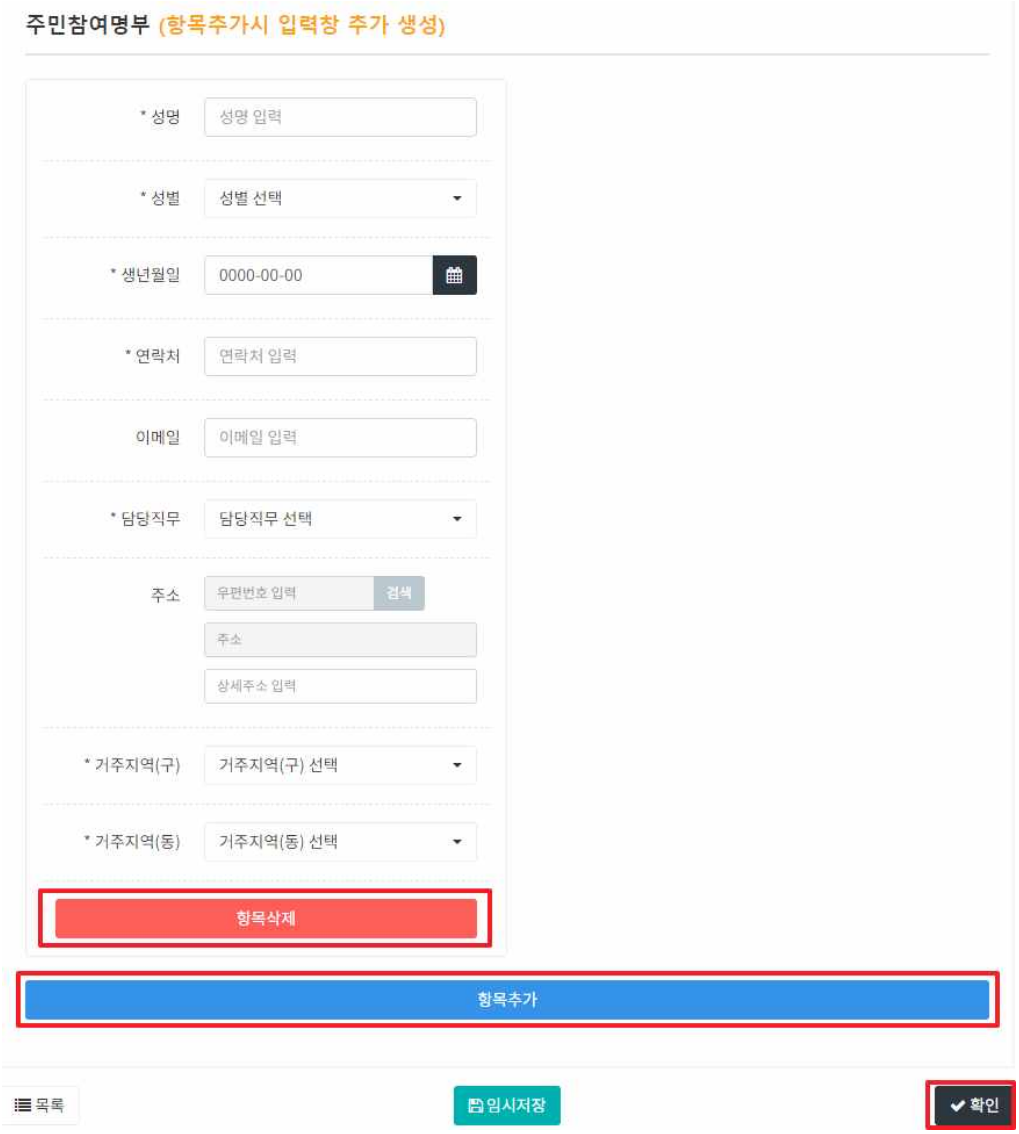

-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명부를 추가 혹은 삭제 하려면 항목추가, 항목삭제 버튼**을 눌러주세 요.
-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10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나의 사업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작성하신 사업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관리

> 공모사업 > 선정결과 > 나의 사업관리

목록 | 수정 | 삭제

사업단계 : 기획공모

2019년 공유단체. 기업지정사업

사업신청서 출력 | 사업계획서 출력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선정상태	검토전	보조금	0원
사업구분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자부담	0원
모임(단체)명	test	총합계	0원
제안사업명	test	※ 총합계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산(보조금 합계+자부담 합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유형	마을의제		
모임유형	주민모임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1) test

사업개요

추진기간	1900-12-01 ~ 1900-12-14
사업지역(구)	대덕구
사업지역(동)	신탄진동
사업대상	test
사업내용	test

첨부파일

Test.png(36.38KB)

세부추진계획

추진과목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어떤 이유로 마을에 필요합니? (대상/내용/방법)
항목	하위항목			
사업	세부사업1	test	시작일자 0000-00-00 종료일자 0000-00-00	1.대상: test 2.내용: test 3.방법: test

사업계획서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예산과목		편성세목	보조금		
항목	하위항목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활동비		test	test	0원	test
		test	test	0원	test
소계				0원	
사업운영비	세부사업1	test	test	0원	test
소계				0원	
업무추진비		test	test	0원	test
소계				0원	
시설비		test	test	0원	test
소계				0원	
합계				0원	

단체정보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구
test	남자	2019-12-18	20202020	ewet@wet2e	(01182) 서울 강북구 솔매로22가길 5 (미아동)	중구

주민참여명부(3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구)	거주지
test	남자	0000-00-00	2222		()	동구	낭월
test	남자	2019-12-17	2323232223		()	서구	관저
test	남자	2019-12-19	2323		()	중구	무수

목록 수정 삭제

12 선정결과 메뉴에서 사업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저장소

01 조건에 따른 사업과 모임(단체)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SDGs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배경과 의의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므로, 각 국가들은 가장 적절하고 관련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법,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과 같은 5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습니다.

K-SDGs 수립 및 의의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 마을공동체와 SDGs

마을 이웃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생활의 욕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형성하는 관계망을 우리는 '마을공동체'라 합니다.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토대를 완성하는 일은 주민자치력에서 나옵니다. 대덕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를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통해 일과 경쟁, 성장 중심가치로 저하된 삶의 질이 회복되며,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 마을공동체 활동사례와 연계한 SDGs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빈곤인구 비율 줄이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최소화, 재난에 대한 빈곤층 보호와 같은 빈곤 퇴치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000년 이래 세계 빈곤율은 절반으로 낮아졌지만, 개발도상국의 10명 중 1명은 여전히 하루에 1.9달러의 국제 빈곤선(최저 생활비) 이하 생활비로 살고 있으며, 일일 금액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은 수백만 명 이상 존재합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 진척을 보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빈곤은 지속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입과 자원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 및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동네돌봄 네트워크 만들기 ▸ 홀로 어르신과 마음 산책하기 ▸ 어린이 식당 ▸ 동네 냉장고(마을에서 남는 식재료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나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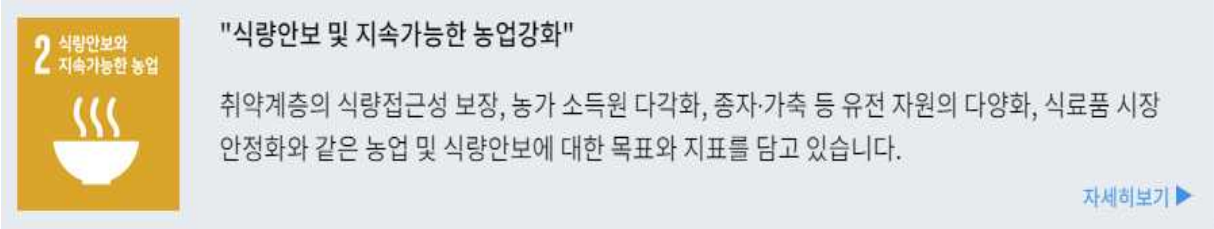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재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농업·임업·어업은 모든 사람에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 중심의 농촌 발전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양, 담수, 바다, 산림의 훼손으로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기회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해야 하며, 열악한 식량안전보장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인구는 8억 1500만명,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20억 명의 인구가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부양하려면 세계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은 영양결핍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토종종자 살리기 교육, 보급, 체험(농사) 활동 ▸ 지역 농산물 이용 동네밥상 ▸ 지역 생산 농가 방문 · 농사체험 ▸ 지역농산물 장터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건강보장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과 약물오남용 예방, 산모와 아동의 건강 보호, 인구고령화 대비 등 건강한 삶 보장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전 연령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인류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영·유아 및 임산부 사망률은 감소하는 등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2030년까지 10만 명당 70명 미만의 임산부 사망률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출산시스템의 전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리 중 깨끗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을 장려하고, 담배의 위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질병을 근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지원, 위생 개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갈등·소통력 증진을 위한 모임 ▸ 의약상식 학습 및 폐의약품 수거 ▸ 중년 남성 공동 밥상 차리기 ▸ 아빠가 만드는 이유식 ▸ 내 마음과 친해지기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증진"

성별과 나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교육 접근성 보장,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 교육 증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양질의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입니다.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현지인들이 국제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를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2억 6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중퇴했고 그들 중 22%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조차 읽기와 계산 등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과정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의 학교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문맹 퇴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보편적인 교육목표 달성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남녀 아동 사이의 초등교육의 평등은 달성했지만, 교육 전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부족한 이유는 훈련된 교사의 부족과 빈약한 학교시설, 농촌 아이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회 등 자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장학금, 교사연수 워크숍, 학교 건축과 수질 개선, 학교 전기설비 등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배워서 남주는 재능나눔 실천 네트워크 ▸ 책 읽고 좋은 글귀 나누기 ▸ 우리동네 지혜도서관 ▸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나누는 동네학교

"성평등 보장"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적착취 및 폭력 종식,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과 법 강화 등 양성평등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포함)에 따라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및 소녀들은 세계 각지에서 차별과 폭력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에 필요한 필수 토대입니다.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풀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고, 현재 49개국은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로운 관습인 여성성기 절제술(여성 하례)은 30% 감소하는 등 진전은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녀들의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의 평등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면 생리대 만들어 나누기 ▸ 여성친화 안전마을 만들기 ▸ 생활기술학교를 통해 자립기술 배우기 ▸ 아빠학교를 통해 가정 내 역할분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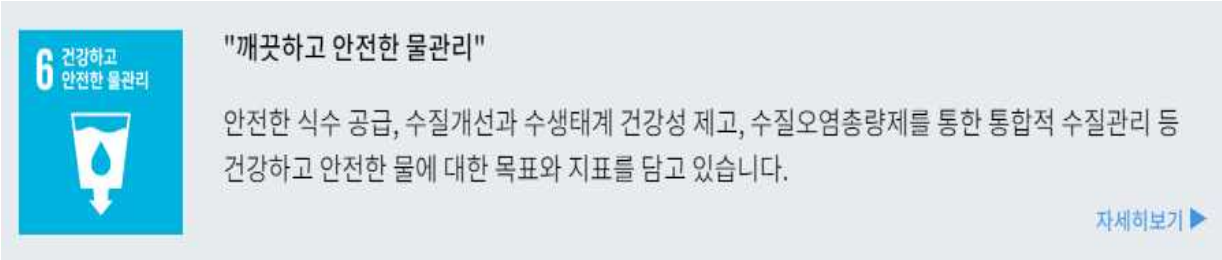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깨끗하고 이용가능한 물은 건전한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양의 담수도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난이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 부족과 위생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불충분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가정의 식량안보와 생계수단 및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수 고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최소한 4명 중 1명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물 부족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특히 가뭄은 최빈국에 기아와 영양결핍을 악화시키는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 식수와 위생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 공급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향상 및 공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부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의 수생태계 및 위생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친환경 비누, 세제 만들어 사용하기 ▸ 빗물이용 방법 연구 ▸ 물 아껴쓰기 실천 캠페인 ▸ 빗물이용 골목정원 만들기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에너지 접근성 보장, 청정 에너지 증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운송분야 대기오염 최소화와 같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에너지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과 기회의 핵심입니다. 일자리, 안보, 기후변화, 식량생산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보편화와 효율 증대,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억 명의 사람들이 청정한 조리 기구를 이용하지 못해 대기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억 명 미만의 사람들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 수력·태양열·풍력발전의 이용에 큰 진전이 있었고 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률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청정연료와 기술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건물·운송 및 산업의 최종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도 증가해야 하며 국제적인 에너지시스템 변화를 위해 규제 체제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 실천 캠페인 ▸ 우리동네 탄소배출 조사활동 ▸ 녹색소비운동(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벼룩시장 등)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근로자 권익보호 등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5.7%의 세계 실업률 속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약 2달러로 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느리고 불균등한 이러한 성장은 우리에게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재고하고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불충분한 투자, 소비 감퇴는 '모두가 성장을 나누어야 한다'는 민주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초적인 합의를 점차 악화시킵니다. 전년 대비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속도가 저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7% 성장률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했고, 우리의 생활수준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일자리 기회와 양질의 근로 조건도 필요합니다.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역·은행·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수반되어야만 세계 빈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마을의 일자리 조사를 통해 마을에서 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 노동 · 인권 학습회 ▸ 동네가게를 이용한 동네밥상 차리기 ▸ 생산자와 소비자 대화모임 ▸ 우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동네 네트워크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정보접근성 향상, 산업의 다양성 추구, 기술역량 강화, 연구인력과 자본 확충, 환경친화적 산업활동과 같은 인프라와 산업 혁신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교통, 관개, 에너지, 정보 및 통신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성 및 소득 증대, 건강 및 교육 향상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조업은 경제성장, 고용, 사회 안정성의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1인당 4,500달러의 제조업 가치가 부가되었고 최빈도상국의 경우 1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제조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진보는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같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이 없이는 산업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산업화가 없다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제품을 관장하는 첨단 제품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람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일상 속 불편함을 과학과 연결하는 생활 속 실험(리빙랩) ▸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기술 ▸ 스마트하게 배우고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스마트폰 기술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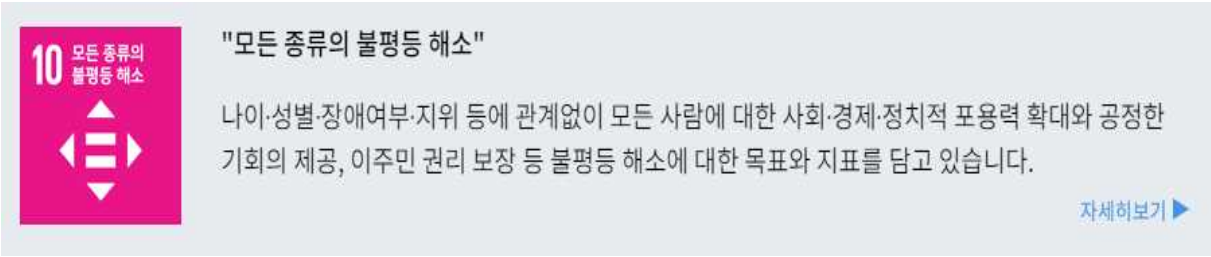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빈개도국, 내륙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도국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문에서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3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빈곤을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94개국 중 60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투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면세 처우와 수출 호조세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이주 노동자들의 높은 송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마을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장애인, 난민, 노동, 복지, 성소수자, 정치 등 학습)위한 활동 ▸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2050 활동 ▸ 우리 마을에 존재하는 다문화 교류 및 체험 활동 ▸ 마을 조사로 좋은마을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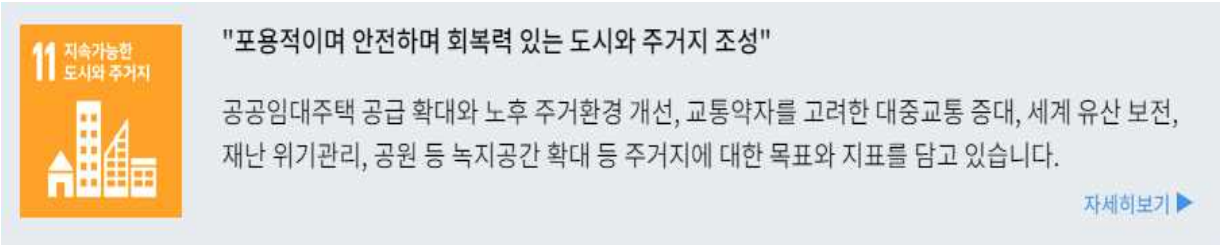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는 아이디어·상업·문화·과학·생산성·사회개발 등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 번영 방식으로 도시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문제로는 도시혼잡 외에도 부족한 관리운영 비용, 주택 부족, 생활 인프라 감소,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고형 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오염과 빈곤을 줄여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예는 도시 쓰레기 수거의 증가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기본적인 서비스, 에너지, 주택,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골목길 활용 이웃들과 골목 정원 만들기 활동 ▸ 골목 반상회를 통해 골목길 문제 해결활동 ▸ 동네 산책길에 쓰레기 줍기를 통해 건강도 살리고, 마을환경도 가꾸기) ▸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입장에서 마을 길 조사 활동 ▸ 마을 네트워크를 통해 100년을 내다보는 마을계획 세우는 활동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증진"

녹색 제품 인증 및 구매 확대,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식품 손실률 감소 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것은 전체 개발 계획을 달성하고, 미래의 경제·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천연자원 중 금속 소비는 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소비됩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또한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하는 것"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자원낭비나 오염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급망 운영에도 중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 표준 규정이나 라벨을 통한 적절한 정보제공,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재활용품 리폼 활용하는 활동 ▸ 사용하지 않는 물품 이웃들과 나누는 벼룩장터 ▸ 냉장고 털어 마을밥상 차리기 활동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한 적응 능력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친환경차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 변화는 이제 대륙 전반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 공동체 및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 패턴은 변화하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기상이변은 잦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최고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세기에 해수면 온도도 평균적으로 3도를 넘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난하고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확장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는 더욱 청렴하고 탄력적인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적응방안을 도모함에 따라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초국경적인 세계적 도전 과제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2016년 11월에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구의 기온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4월, 175개국이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10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응계획을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공공교통,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 거리 만들기 ▸ 지구를 위해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기(다회용품 사용, 조금 어둡게 살아보기, 에어컨 줄이기 등) ▸ 지구를 지키는 실천운동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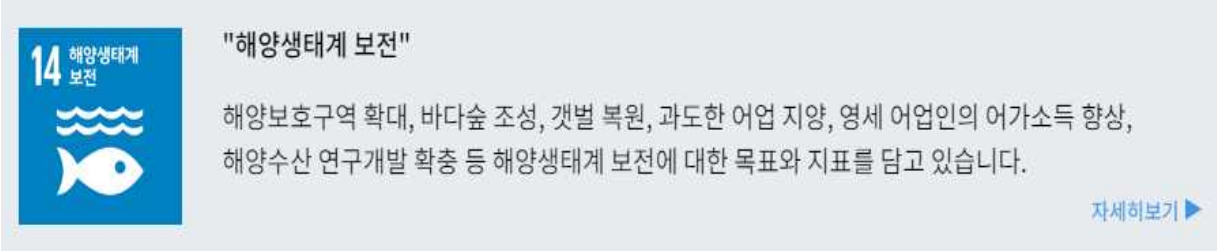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의 해양은 온도, 화학반응, 조류, 생명력 등 지구를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서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식수, 날씨, 기후, 해안선, 음식,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산소까지도 결국 바다에 의해 제공되고 규제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대양과 바다는 무역과 수송에 필수적인 통로였습니다.

이 필수적인 글로벌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염으로 인해 연안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해양 산성화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규모 어업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자원이 풍부해야 하며, 남획, 해양오염 및 해양산성화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쓰레기 줄이기 실천 활동 ▸ 미세플라스틱이 미치는 해양 생태계 알아보고, 줄이는 실천활동

"육상생태계 보전"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강화, 황폐화된 토지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동식물 밀거래 근절,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등 육상생태계 보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산림은 지구 표면의 30.7%를 차지하며 식량 안보와 보호지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과 토착민들의 집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림보호를 통해 우리는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며, 건조지의 지속적인 파괴로 인해 36억 헥타르가 사막화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의 15%까지 보호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삼림 벌채와 사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요한 차질을 빚고 빈곤 퇴치에 있어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녹색생태계 보존 활동 ‣ 계족산 지킴이 활동 ‣ 우리동네 공원 알고 만들고, 지키는 활동

"인권·정의·평화"

법치 증진 및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부정부패 및 뇌물 수수 근절,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과 기본적 자유 보호, 차별 지양을 위한 법과 정책의 수립, 남북한 평화 협력 증진, 디지털 인권 보호 등 인권·정의·평화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 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와, 전체적으로 고려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 중 하나는 전 세계 출생 등록의 시행과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성폭력 예방 활동 ▸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 아동보호 우리동네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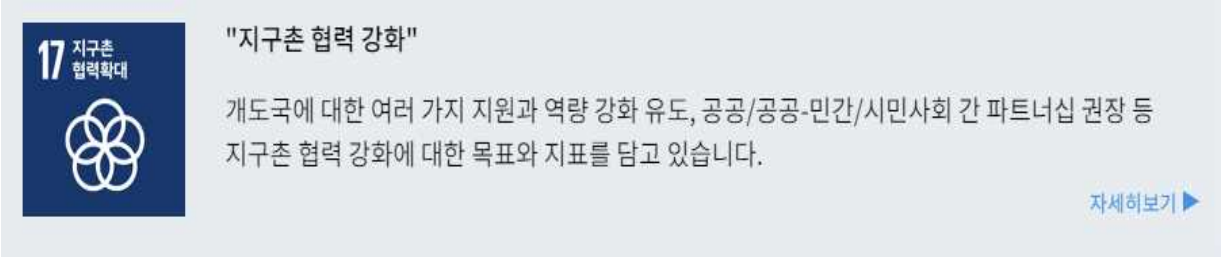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정부·민간·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과 가치, 비전 및 인류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목표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전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역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 조 달러의 민간 자원의 힘을 바탕으로 전환 개방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요구됩니다.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장기투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핵심 분야에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및 운송은 물론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포함됩니다. 공공 부문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및 감독 규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 감사기관 및 입법부의 감독기능과 같은 국가 감독기구 체제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 예시	▸ 지속가능한 대덕 마을만들기 토론회